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1월22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 소위심사결과 보고 등

심사된 안건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 1
   - 소위심사결과 보고 등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 소위심사결과 보고 등

○위원장 정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고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여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한 후 우리 특위 의견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관영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김관영 위원입니다.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한 이후 11월 2일·9일·19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관련 사항 등 네 가지 과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겸직에 대하여는 지난 전체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겸직 금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당선 후에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하되 대학교수직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사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겸직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겸직 금지의무 위반 시 출석정지는 그 기간을 90일 이내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하였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사유 추가 및 강화는 의원 겸직 금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은 제19대 의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로회원 지원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개정하려는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령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던 중에 공무원 등에 취임하여 지급이 일시 중단된 연로회원은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에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이나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두어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시 보고드린 내용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합산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산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부채를 제외한 금융 및 부동산의 순자산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보완하여 가구 종합소득 합산 시 연금소득은 2분의 1이 제외되도록 하였고 기준소득 경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준소득 이상이라도 연로회원 가구의 실제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로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범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로 처벌받은 보좌직원 등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 이외에도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하였고 향후 5년 동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회의 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확정판결 등본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시 그 의결로 고발하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인사청문 관

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요구권한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이상 6개 직위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이상 지난번 전체회의 시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및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원구성 지연방지 관련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입니다.

의원 겸직 부분에 있어서 겸직 관련 세부사항에 당선 직후에 사직하는 부분, 교수직 사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권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학교수직을 당선 직후에 사직하게 되면, 우리가 정치권이나 보통 여러 곳에서 인력풀을 가장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쪽이 교수 자원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교수 전체 인력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1회에 한해서 허용한다든가,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교수들이나 정책에 잠시 뜻을 펼치고 다시 교수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수한 풀을 정치권에서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에서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하고 합쳐서 10억 이상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집만 하나, 주택만 하나 보유를 하는데 현재 주택이 거래도 안 되고 해서 모기지론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유일하게 집 단독 한 세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에서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이 4개의 직위에 대해서는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이라서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행을 살펴봤을 때 엔지니어링 중심인 이런, 물론 정책을 다 관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겠지만 과도한 인사청문회의 특성상 이거를 선순환 형태로 바꿔 가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적절한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장이나 국무총리실장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일을 보좌하고 빨리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어서 전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물론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임의적 권한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이렇게 듣고 박범계 간사님하고 소위 위원들께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답변을 해 주기로 하고, 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부터 한번 먼저 질문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예, 좋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위원장 정희수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겸직 금지 관련해서요, 소위원회 심사결과 겸직 금지 관련 사항 '나'에 보면 7번에 '겸직하는 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배제'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사나 의사를 했던 분들이 보건복지위에서 배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의 전문직을 살려서 그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갔는데 직접 이해가 있다고 그래서 배제되는 경우를 제가 과거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군 출신이 국방에서 배제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걸 조금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수직 문제에 대해서,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되었다가 또 교수가 되었다가 이게 입출입이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한 번 자기 분야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생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대체로 1회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것은 조금 예외로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것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만둬야지요.

그래서 양쪽의 입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연로회원들 문제 중에서 재산 기준 10억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10억 갖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 재산을 팔아 버렸다, 그러면 10억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경과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로회원들 중에서 그동안에 계속 받았다가 이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의 시행을 당장 내년부터 하기보다는 무조건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둬서 연로회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폭력에 대한 국회의장 고발의무화, 굳이 고발의무화나 취소를 안 해도 제3자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발의무화 내지 고발취소 금지를 거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 제한, 이것이 선거법은 아닌데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걸 10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상,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장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권하면 분명히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실장은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국민권익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급들이 여럿인데 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전문직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왜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회하고 여기 선별한 위원장하고의 구별 기준이 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金永柱 委員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지를 한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재산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위탁은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임대업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업을 못 한다고 하면 세법적인 문제에서부터 기타 등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재산권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대까지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직업정치인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묶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우리 함진규 간사님은…… 우

리 소위 위원들은 아니까 아닌 분들한테 먼저 질문 그걸 주고 나중에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예.

○위원장 정희수 홍일표 위원님, 혹시 얘기 한 말씀 의견을……

○홍일표 위원 우리 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율을 많이 대체로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저는 전체적인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각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안을 앞다투어서 서로 발표하고 또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로 공통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19대 국회가 그동안 기울였던 국회 쇄신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못 보고 오히려 국회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새누리당이 개원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세비 반납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쇄신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겸직 금지라든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폭력예방제도라든가 이런 거 사실 그동안 18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개원하자마자 이거를 발의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전혀 조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19대 국회는 개혁대상이다 이렇게만 비쳐지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런 여러 제도에 더해서 대선캠프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쇄신안들,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치구조 쇄신안들도 우리 쇄신특위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쇄신 눈높이에 맞추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저는 세부적으로는 크게 이의를 달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우리가 축소하고 개편하면서 기존에 연금을 받던 분들을 일부 받지 않도록 이렇게 바꾸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소급입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다 참고를 소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 10억 기준 이런 건 실제로 현장에서 회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이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지금 이렇게 나온 내용 중에 우리 양 간사님들한테, 우선 소위 멤버시니까 답변의 기회를……

박범계 간사님 먼저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배경을 설명……

○박범계 위원 예, 보고도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일단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 파행도 거듭하고 그런 끝에 이런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의원 겸직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해서 대학교수직은 보기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교수직도 정교수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임강사까지, 또 보수를 받는 시간제 강사,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의 형태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인자 하나하나를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 가지고요.

지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강은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소위 폴리페서(polifessor) 문제인데요. '1회에 한하여'라든지 그런 제한을, 입출입을 유연성 있게 두자 하는 그런 견해가 계셨는데 논의해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나'항의 '겸직하는 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배제'는 지금 김성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변호사는 법사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조인은. 의사, 약사는 보

건복지위원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행위를 금지하자는 데 근본적인 정신이 있는 것이지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을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법률에 규정이 되면 큰일 날 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임대업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한 돈 100만 원씩 받는 정도의 겸직도 금지하는 마당에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를 또 받아 가는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였고요, 그런 합의를 이루었고요.

다만 그렇다면 소유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대목인데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소유권은 갖되 사업자등록을 별다른 사람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헌정회 연로회원 문제인데요.

전문위원, 재산 변동 시 10억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합의한 현재 기준으로 10억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이분들은 소급해서 적용 대상이 되기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매년 조사를 해서……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박범계 위원 그래서 김성곤 위원님 지적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재 혜택을 받는 연로회원 중에 현재 기준으로 이 기준에 맞아 가지고 제외됐지만 그 후에 재산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재산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자는 말씀 충분히, 워낙 이것은 기득권, 기득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기존에 혜택을 받는 분에 대한 소급적인 재산상의 이익의 박탈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자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재산기준 10억에 지금 헌정회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순재산, 순자산 10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듭니다. 저도 서울 강남에 소유하던, 국회의원이 되면서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유일한 집을 제가 최근에 매도했는데요, 강남에 있는 30여 평 아파트인데 그렇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시가가 한 6억 500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0억으로 계산하면, 실제 서울 강남의 말 그대로 상당히 고급아파트인데 국민 여론이 과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 유일한 주택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과연 국민 여론이 납득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덩치가 큰 아주 고가의 아파트는 또 모기지론의 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 타당성에서는, 형평성에서는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상당한 자산의 소유자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까 기득권의 기존 혜택의 소급적 재산적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가혹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종의 대안으로써 이 기준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헌정회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헌정회가 그것을 수용해서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폭력 관련해서 김성곤 위원님이 국회의장의 고발의무화 문제, 제3자가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장 고발은 역시 국회폭력에 대해서 엄단하고 우리 국회가 다시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상징으로서 또 권위로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선거권 제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폭력죄·상해죄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원 실무상 벌금 500만 원, 폭력 하나의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해서 확정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과중한 폭력, 상당히 위험한 폭력의 경우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정말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해진단이 6~7주 이상 나오는 경우, 아주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형이 선고됩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단순한 멱살잡이라든지 또는 어깨를 쳤다든지 밀었다든지 이런 정도의, 권장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이지만 이런 정도의 폭력은 솔직한 얘기로 법원에 가면 그것은 거의 1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선고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양형례를 거꾸로 놓고 보면 벌금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폭력은 대단히 위중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저는 합당한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은 소위 말해서 보스가 내 사람을 내가 비서로 쓰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쓸 수 있어야지 누가 뭐라 하느냐, 그게 또 편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장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과 권한을 생각하면 대통령실장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다수의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위원장입니다. 전문성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의 지위가 장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문 대상으로 했고요……

○김성곤 위원 장관급 위원장이 셋뿐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권익위원장도 있고 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 장인 경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장관급 위원장을 다 넣어야 되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는 장관급만 넣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소위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대체로 수긍하셨던 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뒀고, 또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격제한 규정을 뒀습니다마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이 자료제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두자, 이 논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논의를 해서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강력한 저의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원구성 지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성 지연은 4차·5차 소위에서 잠정적인 소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는데 다수당과 소수당이 전체 의석 지분비율대로 그 수를 나누고 그다음에 다수당이 먼저 선호하는 해당 상임위원장을 고르면 그다음에 소수당이 두 번째를 고르고, 그렇게 해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석 지분비율에 차이가 나는 마지막 석은 다수당이 마지막 상임위원장을 갖는 방식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6차 회의인가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행도 있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 소위에서 합의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정희수 예, 더 논의하게 됩니다.

원혜영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소위 위원들 아닌 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위원들께서 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원혜영 위원 공부 좀더 하고……

○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함진규 간사님……

아,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일표 위원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에 있어서 10억 기준에 대해서 대안으로 헌정회 정관에 자체적으로 정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억이 꼭 국민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또 재산소득 수준도 해마다 평균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회원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스스로 이 정도 재산 있으면 안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청문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장관급이고 영향력이 많아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은 아무래도 정무직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청문까지 꼭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희수 사실 우리 했는데, 가면 갈수록 투명사회로 가고 도덕성도 요구되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그만한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앞으로 시대적 요구사항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는 그런 분들이 보좌하고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소위 위원들의 다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연로회원 지원금 관련해서도, 또 다른 얘기가 뭐냐 하면 형평성 문제도 많이 논의가, 제기가 됐다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은 받고 있는데 한 달 모자라서 어떤 결정 시점에서 못 받게 돼요.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달 모자라서 놓쳐서 못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건의가 들어왔고 해서 참고로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진규 간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함진규 위원 박범계 간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겸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논의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요구사항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기존에 했던 거라 하더라도 우선 국회의원직에만 전념해 달라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이게 전문성하고 또 이권개입 소지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법사위 가는 거야 저는 이권개입 소지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특히 법무법인 같은 것도 다 사직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또 국토해양위 오면, 또 버스회사를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국회만 그런 게 없는데 전문성하고 이권개입 소지하고 어떻게 그걸 조화롭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제가 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광역의원들은 못 갑니다. 제가 대표 할 때도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직업과 관련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하는 사람이 관련 상임위 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 객관화시켜서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에 포인트를 둬야 되고 전문성도 좋지만 이권개입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독 국회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페이지 나항의 7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다수 의원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굉장히 있으시고 다른 분들도 또 헌정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용섭 위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산기준 관련돼서는 우리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헌정회 쪽에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애초에는 재산기준에 관한 것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다른 헌정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7·18대 때 당선이 되고 19대에 와서 낙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원 A, B가 있을 경우에 A 의원의 경우에 17, 18, 19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단 65세는 안 됐고, 그러면 그 분은 당선됐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7·18대에 당선되고 19대 때 낙선되신 분들은 오히려 낙선됐기 때문에 65세가 넘은 경우에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불공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이나 관련돼서 어차피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걸 좀,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당선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자체가 또 영광이 아닌가, 좀 외람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로회원과 관련돼서 제가 헌정회에서 자료를 좀 갖다 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일부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다양해요. 80세 이상 회원이 한 2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생활 하시는 분이 한 12명 또 연로지원금까지도 압류되신 분들이 있어요. 연로지원금 120만 원 주는 것까지 17명이 압류가 되어 있고 무주택 회원이 156명,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입원비 대신에 자기 시신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형태를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파고다공원이나 서울역 가서 무료급식소 이용하시는 분들, 종이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끼리 무료급식소에서 먹다가 얼굴 보기 싫으니까 이러고 하는 경우도…… 제가 헌정회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생각 같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아마 처음에 얘기하실 때 제 생각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며칠 하다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뭐 이런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애초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건데 이게 너무 기존에 굉장히 열악한……

아까 홍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급입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요. 기존에 받던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 19대 의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것은 좀 합리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도 잘된 것 같고, 다만 재산기준이 문제인데 이 10억도 헌정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처분도 안 되고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정 부분 다시 재논의를 해서 10억으로 하든 15억으로 하든 합리적인 선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연금과 관련돼서는 헌정회에서는 이런 걸 또 호소하고 우리 쪽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객관성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아마 용역 중에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받아 봐서 외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 플러스 좀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폭력과 관련돼서는 아주 쇄신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본회의장이나 뭐나 그냥 뭐라고 그럴까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 게 다소 좀 상대방 당에서는 거슬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야유를 보내고 이런다는 게 저는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 또는 야유와 관련된 이런 규정은 강력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청문회도 저는 우리 김성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장이나 국무총리실장은 이미 대통령이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또 다른 특히 예민한 정쟁의 대상입니다. 어느 당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집권을 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명을 할 때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쓰는 것 그건 어느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총리실장이라든가 대통령실장까지, 단순한 보좌기능인데 이걸 또 청문회 대상에 삼아 가지고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김관영 위원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김관영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자료 1페이지 나항의 7항, 겸직하는 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배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조금 오해한 것이 예를 들면 약사나 의사가 보건복지위에 배치되는 것, 이런 것이 이 규정 때문에 혹시 금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겸직 금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만 겸직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예를 들면 대한농구협회 회장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고 보고요. 대한농구협회의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선임이 된다면 그 대한농구협회의 회장직을 이용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공익목적의 법인에는 인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다 인가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순수한 봉사단체가 어떤 기관은 보건복지위 소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재위 소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일 수도 있고, 이런 소관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의 명예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맡은 명예직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소위 비영리법인을 인가한 그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면 그 겸직하는 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배제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하고는 좀 관계가 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앞에 소위원회 간사님이 다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빠진 부분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 그것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 특위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눈에 맞춰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뭔가 정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 간사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차례 진통을 겪고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와 같이 안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든가 쇄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겸직 금지에 대학교수는 사직을 하도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아까 뭐 강 위원이 정책의 뜻을 펼치는 경우에 5년 휴직을 하고 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들이 정책의 뜻을 펼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국회의원이 돼서 펼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위원회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국회의원이 돼서 5년 동안 활동

을 잘했을 경우에는 다시 나갔을 때 그분을 더 좋은 학교, 더 다양한 곳에서 교수로 모시려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역할을 잘하신 분들은 나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고 본인이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하다는 생각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외를 자꾸자꾸 두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에 들어오면 오직 국회 활동에만 좀 전념을 해 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어떤 안을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맞는 건지 당선일부터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입니다. 외부의 국민들은 이것을 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득 수준 관련해서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소위에 가지고 온 안이, 처음 제시한 안이 헌정회하고 의논이 된 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안이면 그대로 받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고요.

재산이 지금 우리가 10억, 부동산재산 가액 10억은 현실성에서는 저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10억, 우리 간사님도 아파트를 팔았는데 6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점점 상향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이 금액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반드시 어떤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국회의장이 꼭 그렇게 고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3자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제3자가 해도 그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들어간 건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같은 의원으로서 웬만한 것은, 뭐 우발적이고 이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결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 강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추후에 그때 또 보완을 해 가면 될 것 같고요.

보좌직원이 향후 5년 동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한가, 이 규정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 앞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 어디요?

○김관영 위원 벌금형 5년, 집행유예 10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300만 원이잖아요.

○김관영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만 원 받았다……

○권은희 위원 예, 300만 원 받았다……

○김관영 위원 300만 원 받으면 국회의원은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 선출에 대한 제한, 선출직의 출마에 대한 제한은 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청문 대상에 장관급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아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주로 보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재산 상황이나 아니면 논문 표절 부분 그런 것으로 어떤 청렴성이나 윤리성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논문을 사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적어도 그 부분은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은 사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같이 어찌 보면 일체화돼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장관급 모두 인사청문 대상에 두되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법안소위가……

○위원장 정희수 그러고 난 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金永柱 委員 아까 박범계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에 하나 의원되기 전부터 부동산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 함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업을 못 한다고 봤을 적에 전부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무상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개인의 재산권 소유에 어떤 제약을 주는 거 아닌가, 또 전체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임대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세법에 무상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상이 아니면 말이지요. 그것도 임대업이라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의원직을, 의원이 되기 전에의 부동산을 이렇게 제약한다는 것은 정말 기본권 자체를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닌가, 또 이것을 제약해서 국회의원 활동에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을 못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논 중에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김영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임대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차이가 임대료를 받거나 이러는 원래 조건인 경우는 달리한다, 이렇게 구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있어서 임대료를 몇 군데서 받았었고 이거 다 무상으로 남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을 업을 좀 전문적으로 해 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 겸직, 이런 부분에 좀 국한되는 것으로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걱정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좀더 자세히 보고 논의를 좀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것은 제가 소위를 하면서도 그렇고 쇄신특위 하면서도 그렇고 우선 저희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쇄신특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매일 싸움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은 되게 많아,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몇 번 제기했는데 국회의원은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KTX도 공짜로 타고 자동차도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비행기를 공짜로 타는 일 없고 KTX 공짜로 타는 일 없고 자동차 나오는 일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의원이 국회 업무 일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교통비가 드니 그럴 때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용 교통수단으로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불필요한 혜택, 어마어마한 혜택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중계도 있고 하니 한 번 더 알려 드려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알려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이라며 잘못 알려진 부분은 이번에 다시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어쩌면 정치를 국민에게 신뢰시키는 먼저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싸움 방지입니다.

'너무 많이 가졌어' 이거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왜 매일 싸워?' 이것은 저희가 18대 때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폭력은 방지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폭력을,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법적 제재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폭력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나 하라고 뽑아졌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 해 줬는데 왜 가서 폭력을 쓰는가, 왜 보좌관은 폭력을 쓰는가, 사실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과거로 치면 다수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그것은 뭐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도 있고 저희 당이 집권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수 집권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 몸싸움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몸싸움 방지를 만들고 있음과 동시에 국회선진화법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또 국회의장이 급하다고 상정해 놓고 국가 안위라고 얘기하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날치기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장치를 같이 국회선진화법하에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불상사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청문회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제가 제기했습니다. 차관도, 모든 장관도 다 청문회하자라고 법안을 냈었습니다. 18대 때 마지막에 자동폐기된 법안인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국회활동을 하면서 청문회 대상이 너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 우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 여야가 다 인권위원장의 부당함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아무리 하면 뭐 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회가 동의해 줘야 하는 인사가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가 반대하지만 강행되는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대상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그것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대상을 너무 많이 넓히면 지금은 효율성이 떨어지니 좀 줄이는 것에, 제가 낸 법안이지만 여러분께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직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런 것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다른 소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어떻든 출마할 때까지는 교수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교수직은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교수직을 트라이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직은 사퇴를 해야 다른 시간강사들에게 교수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수에게 배울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은 혹시나 너무 위헌적 요소가 있지는 않나 이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법안소위가 10시 20분부터 있어서……

○위원장 정희수 지금 우리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강동원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저는 소수정당으로서 소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국회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 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의 폭력 단호하게 대처해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과연 국회에서의 폭력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제공 행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좀 간과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18대 때 외통위에서의 폭력행위, 문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 회의 참석을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았거든요.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본연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수당에서 막아버리고 폭력을 유발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고민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국회법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지키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국회는 제가 지난 첫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 비정규직이고 국회사무처가 정규직화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감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정감사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야당인 민주당 간사가 사회를 보고 국감을 진행하는데,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감을 진행하는데 행정실, 전문위원 마이크 넣지 않습니다. 속기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무산시킵니다. 이것은 폭력 아닙니까?

왜 이런 원인행위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좀 과하게 대응하다 보면 소리도 크게 나올 수 있고 막말할 수도 있고 폭력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스스로 우리가 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국회 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의 죄도 있지만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서영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전에 포털뉴스에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 200가지에 대해서 또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PC를 틀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의원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을 분석해서 지난 11월 2일 방송했습니다. 보십시오.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판 의원회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열을 죽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우편요금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 이건 뭐 아주 소소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공항에 해외출장 가는 거 죽 다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취임을 하면 장관이 사비로 사무실 운영하고 사비로 비서실 운영하고 사비로 출장 가고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국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보좌진 있어야 되고요, 지방 출장 간다, 어디 공무 출장 가면 장관은 출장비로 다 가는데 국회의원은 사비로 가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의 매를 맞아 가면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자의적인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외부 교수, 시민사회단체 죽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 있어서 여야가, 대한민국이 지금 양당 정치, 양당 정당의 정치가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예민한 현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쟁점이 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석전문위원 내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복수로 전문위원을 국회에 파견한다면 사전에 전문위원들이 각 당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의견을 1차 거르고 거기 합의된 것을 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국회가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양당의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소수위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전문위원 토론의 결과보고서 나온 것 보면 그 내용은 전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소외감을 느낀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차제에 공론화해서 제대로 한번,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 연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3일 신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11월 13일 화요일 자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여당·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들 공약사항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돼 가지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두 분 다 '의원연금 폐지'라고 돼 있어요, 신문에 나오는 게. 이게 '의원연금 폐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논의하고 얘기를 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19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신문에 이런 식으로 '의원연금 폐지'라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 재원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여기 헌정회 전직 연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성격이 있잖아요. 명예수당이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건데 저희 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이 전부 '의원연금 폐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도 자료 주실 때, 여기 언론사 기자들 와 계신지 모르지만 이건 좀 차제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문에 이렇게 계속 '의원연금 폐지' '의원연금 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오늘 나왔던 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박범계 위원 대체로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원 겸직,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련해서 반괄호 '나'의 동그라미 7번 항의 겸직하는 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배제는 김관영 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것은 반괄호에 겸직 금지 관련 사항, 겸직 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겸직 허용 여기에 괄호를 치고 여기에 연관돼서 이 규정을 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에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또 약사 출신이 보건복지위에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겸직 허용, 단 동그라미 7항을 괄호 치고 거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권은희 위원 간사님, 지금 현재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박범계 위원 이것이 어떻게 법제화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은희 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의 전제조건이 겸직 금지입니다. 그래서 겸직 금지, 이미 약사는 약국을 안 하고 의사는 의사를 안 하고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겸직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권은희 위원 예.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권은희 위원 여기에서 겸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일 위의 '가'의 '공익목적의 명예직' 이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이 규정을 그대로 두자면 거기에다가 괄호를 쳐서 넣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에요.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해석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괄호를 쳐서 넣는 게……

○권은희 위원 위에다가 괄호를 친다고요?

○박범계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이 부동산임대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식 매각 신탁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다 매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겸직 금지나 영리행위 금지를 한 근본적인 목적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갖고서 겸직하거나 영리직에 있는 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당연히 팔아야 된다면 그건 사유재산 제도, 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어떤 평등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건설교통위원회 이런 데에 가서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업을 완전히 막자, 완전히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직무 관련성 부분을 넣어서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金永柱 委員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부동산이 어떤 게 하나 있다, 경상도에 하나 있다, 호남에 하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한 개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을 가지고 또 어디 국토해양위에 가서 역할을 한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면밀히 더 다가가서 법을 더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쇄신 자체가 정말 쇄신을 위한 쇄신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인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치 보는 안목, 예를 들어서 '안 해 봤으니까 이해를 못 하지' 그리고 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제하는 것도 오히려 다음에 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임대하는 그런 문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지요.

○박범계 위원 조세상으로 아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니까 아마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소유권을 처분하기 전에는 다 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김영주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쟁점이 이것이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교위—지금은 국토해양위지요—를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나의 업으로서 부동산 임대료를 많이 받는 분, 소위 '부동산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경우에 이건 전문성의 문제가 아닌데 굳이 그런 분이 국토해양위에 가서 부동산정책을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전문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金永柱 委員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나왔던 것을 박 간사께서 이 내용을 수정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죽 나왔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박범계 위원 첫 번째, 의원 겸직에서는 대체로 공감이 가고, 아까 동그라미 7항은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괄호 치고 넣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이 부분은 원혜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혜영 위원 ……

○김성곤 위원 지금 여기에서 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함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함진규 위원 이것을 아까 간사님께서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좀 자율적으로……

○박범계 위원 아니, 부동산임대업……

○함진규 위원 아, 임대업요?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희수 예.

○김관영 위원 부동산임대업에 관해서는 당초에 여러 번 논의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빠져 있다가 최종 단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은 일정한 신고와 제한하에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거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던 분이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주식백지신탁과 같은 유사한 방법을 하는 것이 지금 현행 제도상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가장 큰 취지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업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직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 그리고 결국은 임대업 하면서 국회의원이 자기 명의로 된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대부분 부동산 임대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을 해도 우리가 겸직 금지하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것까지, 국회의원 직무와 큰 영향이 없는 것까지 다 규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원래 소위원회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빼고 나머지 내용으로 1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헌정회 연로회원은 다른 건 다 문제가 없고 순자산 기준을 유지할 것이냐 뺄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헌정회 자체로도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비판이 있으면 스스로 정화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적어도 '자산 기준은 헌정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그 안에 수식어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관에 연로회원 지원제도의 배제에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세 번째, 폭력은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보좌직원을 그렇게 하면, 300만 원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평등권 위배, 침해가 돼 가지고 바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누구든지 500만 원 그리고 징역형 5년, 10년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은희 위원 보좌진을 500만 원으로……

○박범계 위원 피선거권 제한은 누구든지 '500만 원 이상'과 '징역형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은 현재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가 대통령이 자기 비서실장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못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 여론은 아마도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희수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 아까 논의가 되다가 박범계 위원님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공직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

○박범계 위원 있더라고요.

○김관영 위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 검토해서 이미 잘돼 있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헌정회 재산 기준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관으로 위임하게 하자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결의를 하게 되면 이 워딩을,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민적 요구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소득액 기준으로 한 배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액 기준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소득액 기준이 일응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판단하기 좀 그런데, 곧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원혜영 위원 총리실장은……

○김성곤 위원 그것은 사실 장관이지.

○원혜영 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김성곤 위원 장관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지.

○원혜영 위원 대통령실장은 그야말로 참모지요.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무조정실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장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요. 대통령실장은 역시 대통령의 참모로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통령실장은 제외하고, 국무총리실장은 사실 비서는 아니야.

○위원장 정희수 그런데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할 때 가장 큰 힘을 갖고 옆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바르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만에 혹 검증되지 않은 분이, 잘못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청문회라는 것은 엄격한 잣대에서 바르게, 우

리가 봤을 때 생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것을 다 감안했을 때 괜찮다 이런 사람이 보좌하는 것하고 편협되고 여러 가지 문제된 사람, 잘못 본 사람이 보좌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대통령 보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그림자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는 오히려 다시 한번 재고해 봄직하다……

그리고 우리 쇄신특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정치를 개혁하고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세 후보 공히 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총론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기구까지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시점에서 중요하고, 어쨌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 쇄신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처벌하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관적으로는 어쨌든, 특히 인사청문을 통해서 국민적인 검증과 평가가 시행됨으로써 사전적으로 거르는 효과와 또 국민들이 알게 하는 그런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고요. 차제에 서영교 의원안에 처장, 청장, 차관, 국회사무총장까지 돼 있는데 차관이나 사무총장은 말더라도 처장하고 청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것을 논의는 했지만 너무 범위가 크고 좀 힘이 있는, 예를 들면 관세청장이나 조달청장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장은 한번 검증해 봄직하다, 청문회라는 것은 바른 사람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 너무 이렇게 하면……

○원혜영 위원 아니, 안 중요한 데가 없지요.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다 중요하지요. 그래 봐야 열 몇 개인데 국회 상임위에서 맡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 쇄신의 논의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하고 이런 것이 한 3분의 1이라면 3분의 2의 비중은 어떻게 하면 국회의 역할을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임받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좀더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장님께 제안도 드립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대통령실장은 하는 것이 좋다고 유지하고, 그러면 거기에 차관까지……

○원혜영 위원 차관은 빼고 독립법인의 책임자인 청장, 처장요. 그래 봐야 열여섯이거든요, 처장이 둘이고 청장이 열넷이네요.

○위원장 정희수 독립법인의 처장하고 청장은 포함을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원혜영 위원 처는 보훈처, 법제처 둘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달청, 관세청 등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장 정희수 좋습니다.

○원혜영 위원 거기에 우리 국회가 이것은 중요하고 비리의 소지가 많으니까 하고 이렇게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나 청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희수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도덕적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갖고 이런 과정은 한번 거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혜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쇄신특위가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도 그렇고, 지금처럼 큰일을 할 수 있는 쇄신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 정희수 영광입니다.

○원혜영 위원 이것은 진짜 국민이 준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럽시다.

○박범계 위원 정부조직법상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 처, 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혜영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처와 청의 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몇 개가 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6개입니다. 처장 둘, 청장 열네 명입니다.

○박범계 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직입니까?

저는 찬성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어때요? 다 괜찮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오시면 나중에 수정 보완된 것을 박 간사님이 요약 정리해서 해 주시면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의결하려면 두 분 위원이 더 필요한데 두 분 위원만 오시면 곧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의 과정을 묻고 싶은데, 이게 다시 운영위원회에 넘어가서 운영에서 또 의결해야지 법사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희수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지금 우리가 세심하게 논의한 것들에 관한 입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결을 반영한 입법안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만든다든가 수정안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여야 쇄신특위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합의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면 상당히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을 변경을 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 그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이는 곤란할 거예요.

○원혜영 위원 상임위와 법사위 관계에서 항상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구수정 이상의 과도한 내용상의 문제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이 논란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양 간사님께서 중요하게, 쇄신특위가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 권한에 대해서 분명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해서 기술적이고 자구적인 것이 아닌 내용상에 있어서 임의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용이 채택, 취사선택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쇄신특위가 이번에 올라온 안건 이외에도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말 그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회 쇄신에 걸맞게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 건의 말씀을 드리면, 요전에 공청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희수 예.

○원혜영 위원 좀 세분화시켜서 공청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희수 그렇게 하시지요.

○원혜영 위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또 국회쇄신특위가 뭐를 고민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가의 큰 틀을 새로 점검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회쇄신특위가 우리 영역을 잘 해내는 게 각 후보들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 위원님 마음고생 많았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사실 청문회 대상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청문회의 기본 방향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털기식 내지는 정쟁적으로 청문회를 몰고 가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포지션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과 식견이 돼 있는가 그것을 다시 보는 측면이어야 되는데 과거 청문회를 보면 신상털기식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낙마되는 경우들이 양쪽 정권 다 나왔었거든요.

○위원장 정희수 어떤 누가 되든 간에……

○김성곤 위원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 연금 문제, 19대에 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용역을 맡기신다는 것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연금이 아니고 보조금.

○김성곤 위원 아니, 이때까지는 보조금이었고, 19대 앞으로는 공식적인 연금이 되겠지요.

○함진규 위원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우리가 50%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른 공무원들에 준해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시켜서 비슷한 유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20년 30년 해서 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간이 짧아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세비 받는 것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연금법상 적용할 수 있는 그것에 준해서 50%를 납부하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대략 4년 후에 받아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퇴직금 비슷하게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히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인

상만 심어 주고, 4년 이후에도 계속 얼마씩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또 앞으로는 국회의원 떨어져도 한다는데 떨어져서 내는 것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 요건도 좀 그렇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더 용역 준 대로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김성곤 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합리적인……

○함진규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김성곤 위원 전의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 것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전의 것 용역 하는 것은 아니지요?

○권은희 위원 지난번 것 용역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쇄신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경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참 이상했는데요, 정부 부처가 보고를 할 때 보고자료와 별도로 인사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 같다 해서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A4 한 장을 그 보고서에 끼워서 붙여 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 상임위만 바꿨는데 작은 것은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디 위원회에서 손을 대서 하나씩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진규 위원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직요건 5년에 의원이 급여의 8%를 냅니다. 자부담이지요. 그러니까 재직요건 5년에 급여의 8%를 내고 최고한도는 최종급여의 80%를 받아요, 연금으로요. 그래서 미국도 하고 있고, 영국은 재직요건은 없고 의원보수의 11.9%를 내고 최종급여의 3분의 2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재직요건이 1년이고 의원이 내는 것은 없어요. 전액 국고지원이고 최종급여의 67.5%를 주고, 프랑스도 재직요건은 없고 의원의 기본급여의 7.85% 그리고 최종급여의 70%,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치적 불신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어떻겠냐, 선진국도 다 이렇고, 일본만 지금 국회의원연금법이 2006년 4월에 폐지됐는데, 그것은 왜 폐지됐느냐면 국고부담률이 70%가 돼서 너무 많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어서 결국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보통 기본급 급여의 8~12% 정도를 급여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던져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이것에 대한 비난이 많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제3의 기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 이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원혜영 위원 방금 나누어 드렸는데요.

제안서입니다.

첫째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 및 활성화하고, 두 번째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렸는데요.

이 윤리규칙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 91년도에 개정됐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지침·규범이 93년도에 돼서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세상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내지는 업데이트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야, 국회가 정말 제대로 쇄신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92년도에 14대 처음 와 가지고 그때 했던 것이 깨끗한 정치 선언입니다. 고인이 되신 제정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 14명의 의원이 이를테면 화환 안 보내기, 정치비용 공개하기, 고급 승용차 안 타기, 회기 중에 주례 안 서기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그게 대부분 우리 국회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4년 전에 김형오 국회의장님 때 전문가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도 나온 것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뭔가 아주 쌈빡한, 그러면서도 실천적 의지가 담기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국회가 진짜 제대로 변하려고 하는구

나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담은, 실천적 지침을 담은 윤리강령과 규칙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의견도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상설화의 문제는 제가 몇 년째 입에 달고 다닙니다만,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때 그 당시 홍준표 대표도 설득을 해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상설화를 담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도 필요 없고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우리 국회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16개고 특위가 가끔 만들어집니다만 보통 몇 개월짜리, 1년짜리 단명한 특위고, 그러니까 3선 이상, 4선·5선 의원들은 완전히 뒷방마님이 되어 가지고 겉돌고, 젊은 의원들 또 초·재선 의원들도 뭔가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위원회의 간사 정도를 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의장단 빼 놓고 16개, 좀 많이 확대하면 여야 간사 해 가지고 16 곱하기 3이면 한 사십여 명이 역할을 하는데, 소위를 분야별로, 지금 기능별로 예결, 법안 심사…… 청원은 곁다리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별로 일거리도 없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 나누고 복지 나누고, 복지도 얼마나 쪼갤 게 많고 보건도 쪼갤 게 많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상임위원회에 5개, 6개의 소위원회만 두고 상설적으로 계속 활동하면, 미 하원의 아태소위가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구절절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80개의 자리, 100개의 자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잘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위원장 정희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회의 쇄신 과제인 만큼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조찬회의도 하고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각자 여러 입장과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국회 쇄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쇄신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번 심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겸직하는 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배제 규정과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괄호 처리하고,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로회원 지원금과 관련하여 재산 기준은 헌정회의 정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하도록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독립기관인 처장·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쇄신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쇄신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된 사항들은 조문화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각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문화 작업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 동 원　강 은 희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성 곤　金 永 柱　박 범 계
서 영 교　원 혜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정 희 수　함 진 규　홍 일 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입 법 심 의 관　이 계 인

【보고사항】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金永柱	새누리당	2012. 11. 16